

공 고

●울산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-14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(전파사용료 체납)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5. 23.

울산전파관리소장

전파법령위반 무선국(전파사용료 체납)에 대한 행정처분

1. 근거법령: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
2. 법령위반사항: 전파사용료 체납
3. 처분내역: 무선국 허가 취소,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
4. 처분일자: 2023. 5.11.
5. 송달대상 및 내역

순번	허가번호	호출명칭	시설자명	처분	시설자 주소
1	422011260000006	1208경남호	김○희	허가취소	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9길
2	942021270002429	울산주원전기505	주원전기	신고폐지	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50
3	942021270002194	삼대종합507호	삼대종합건설(주)	신고폐지	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
4	942022270000718	울산형산502	(주)형산건설	신고폐지	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

6. 참고사항

- 가.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취소(폐지)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(단,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)

- 라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(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, TEL 052-231-8935 FAX 052-231-8940)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